

발제문

국정원 문제, 그 진단과 처방전

- 이광철(변호사, 민변)

1. 서 - 이 발제문의 주된 취지

- 검찰수사 결과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대선개입의 충격적인 일단이 드러나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몰타기할 목적으로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전격공개하고 “전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까지 발표하는 것이 작금의 국정원의 현실이다.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법 제2조 제1항의 국정원의 직무범위 어디에도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포괄적으로 개입하고 특히 주권자인 국민의 민의를 왜곡/조작하는 대선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대선을 포함한 정치에 개입하는 경우 이를 형벌로써 다스릴 수 있는 조항마저 국정원법에 있다.

-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1.22]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국내정치현안에 개입하여 사찰하고 공작하는 현상은 도무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 발제문은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대안을 정립할 목적에서 쓰여지는 것이다.
- 이하에서는 먼저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약사를 살핀 다음,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의 전횡과 무능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망한 후, 국정원 개혁의 대안을 검토하는 순으로 발제문을 쓰고자 한다.

2.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약사 - 탄생에서부터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까지

- 현 국정원의 모태가 1961. 6. 10. 창설된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이후 전두환 폭압정권이 세워진 뒤인 1980. 12. 31.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1998. 12. 28.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으로 개칭했다.
- 지난 군부독재정권 시절 중정이나 안기부는 정권의 수호자, 정권의 버팀목의 역할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보기관은 국익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이라는 본래의 소임보다는 반정부 세력에 대한 광범한 감시·통제·적발에 이용됨으로써 독재정권의 폭압장치로 기능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¹⁾
- 1998. 2. 25. 역사적인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고, 정권보위와 인권탄압이라는 정보기관의 기능과 폐해에서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정보기관의 최대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통령 취임으로 정보기관의 정치불개입의 새로운 전통이 세워질 것으로 내외의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안기부의 명칭을 국정원으로 개칭하고 원훈도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꾸어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래의 소임을 다

1) 1997. 대선 직전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이 '북풍공작'을 벌인 사실은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국민의 정부의 국정원 역시 도청²⁾ 등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개혁에 한계를 드러냈고, 국민의 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하겠다고 밝힌 참여정부의 국정원의 경우도 '집권자의 선의'³⁾를 시스템으로 안착화하는 수준의 개혁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⁴⁾ 그러나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그간 대통령의 정치적 보위

2) "2005. 8. 8.,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섰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X파일' 사건 때문이었다....1997. 9.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가 삼성전자 이학수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나눈 사적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건이다. 녹음 파일에는 이견희 회장의 지시로 삼성이 이회창 신한국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정치권 및 검찰 고위직에 불법 정치자금과 떡값을 전달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정관계 인사들을 돈으로 주물럭거리는 '삼성공화국'의 실체에 세상이 경악했다...."

- 프레시안 2013. 7. 10.자(노무현은 왜 '안기부 불법도청' 공개했을까?)

3) 앞에 인용한 프레시안 2013. 7. 10.자 기사에서 임경구 기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국정원의 발표 사흘 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진 건 그래서였다. 기자들의 관심은 노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이 DJ 정부의 도청 사실을 공개한 배경에 있었다.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는 거 아니냐는 음모론적 비판까지 나온 터였다. 청와대 참모들도 "사실을 그대로 공개할 경우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사람들 중에 곤란한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노 대통령을 만류했다.

노 대통령은 '덮고 가자'는 주변의 설득에 이렇게 응대했다. "곤란한 사람 있고 없고 간에 지금 내가 덮으라 했다가 뒤에 덮으라고 한 사실이 발각되는 날, 누가 나를 지켜 줄 것이냐.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이 그다음 누구에게 지시해서 덮으라고 줄줄이 지시를 하게 될 텐데,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하나.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노 대통령의 설명은 이어졌다. "나는 대통령이지만, 내가 모르는 진실을 그냥 과해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터져나와버린 진실을 덮어버릴 수는 없다. 그리고 부닥친 진실을 내가 비켜갈 수도 없다. 적어도 내가 부닥친 이상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것밖에 없다. 지금 내가 그 의무를 위반하고 사실을 덮어버린다고 하면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를 위해서 일한 참모들이 다음 정권에서 또 불러 다녀야 되지 않나? 이 악순환을 어디선가 끊어야 된다."

정권-재벌-언론의 커넥션을 덮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엔 이렇게 설명했다. "도청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다. 도청은 정경유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그 인권침해가 국가권력에 의해서 국민에 대해서 가해지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 문제가야말로 정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이 없도록 조치해야 된다. 국가권력에 의한, 그것도 조직적인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정경유착보다 가볍지 않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더 무겁게 본다."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틀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갑작스레 입원했다. 언론은 '병상 정치'라고 썼다. 노 대통령에 대한 DJ의 극도로 불편한 심기가 표출된 장면이다. 그럼에도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4) 한편, 이 시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국정원의 개혁안을 여러 차례 제출한바 있고 그때 박근혜 당시 의원은 한나라당의 대표 등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다. 지금 국정원 사태에 관하여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하고 있는 양을 보노라면 그때의 개혁안 운운한 것이 차라리 코메디에 가깝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2013. 7. 10.자 한겨레신문의 “새누리, 야당땀 ‘국정원 정계 동향파악 금지’...지금은 뒷걸음” 제하의 기사문이 이를 보도하고 있어 인용한다.

“새누리당은 과거 야당이던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에 ‘메스’를 대려고 여러 차례 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여기엔 △헌법·법률 위반 시 국정원장 탄핵소추 △국회 정보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국정원 시설·장비·문서 공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 강화 △국정원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국정원 직원의 증언 거부 처벌 등 지금 야권이 내놓은 개혁의 핵심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도 관련 법안의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당 대표로 이를 추진했다.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 출신인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안기부 엑스(X)파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뒤인 2006. 3.,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권 폐지나 국내외 파트 분리 방

대 역할을 해 온 점을 고려해보면 ‘집권자의 선의’는 정보기관의 개혁에 있어서 화룡점정의 해당하는 절대적 요소라고 할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의 전횡과 무능⁵⁾ - 밝혀진 것만 이 정도! 국정원에 의한 민주주의는 이미 이때 납치되었다!!

가. 불법 사찰 논란

1) 개요

- 국정원의 민간사찰사건이 계속되어 왔다.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동일시했던 박정희 정권과 5공화국 시대의 중정과 안기부 시절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시절에도 불법도감청을 비롯한 민간사찰 사건이 반복되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정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이후에도 민간인 사찰과 불법도감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민간사찰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국정원은 정치인에 대한 사찰, 법원 또는 검찰수사에 개입, KBS 사장선임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활동가, 문화행사에 이르기까지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활동을 벌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의혹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 등은 담기지 않았지만,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감시 등 정치적 사찰 행위 금지 △국정원 대공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강화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등 국정원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많았다. 당시 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도 이를 보고받았다. 사실상 당론이었던 셈이다.

2005. 8.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국정원의 도청을 금지하고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에는 한나라당 의원 133명이 “남북관계 긴장완화로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됐다”며, 국정원에 대한 예산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99.에는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빙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행위 시 국정원장을 탄핵소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 한나라당 의원 132명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세 법안 모두에 박 대통령도 이름을 올렸다.”

- 5) 이하 글 중 불법사찰 사례와 정보실패 사례 부분의 글은 발제자도 참여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네트워크’ 산하의 ‘국정원 개혁모임’이 지난 2012. 11. 발간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의 내용을 참조한 것임을 밝힌다. 국정원 개혁모임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민가협, 천주교인권위원회, 민변 등의 단체 소속 회원 내지 활동가가 참여하고 있고, 현재도 활동 중에 있다.

2) 정치인 사찰

- 이명박 정부 이후 국정원이 정치인의 사찰에 나섰다라는 주장은 수차례 반복되었다. 특히 야당의원에 대한 사찰보다는 여당의원이 사찰이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 많은 것도 흥미롭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찰이 이뤄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권력의 투쟁과정에서 여당 내 반대파 등에 대한 감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당의원보다 여당의원에 대한 사찰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여당의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이 쉽기 때문일 수도 있다.
- 2010. 8. 16.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 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이 사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확인했고, 국정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의 사업수중에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캐고 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정 의원이 사찰사실을 알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항의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국정원에 알아보니 국정원 직원의 사찰이 있어서 바로 그 사찰을 중단시켰다, 자신들(민정수석실)은 보고서고 뭐고 아무것도 관여된 바가 없다고 변명을 한 게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이러한 사찰은 지난 2008. 총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불출마 및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의 정치적 반대자로 판단하고 소위 ‘영포라인’이 2009. 정 의원을 사찰한 것으로 추정된다.
-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찰의혹도 있다. 2010. 12.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방문한 일식집의 종업원들과 여주인을 국정원에서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실의 행정관으로 파견된 이창화씨가 내 사했다고 밝혔다. 이창화 행정관은 박근혜 위원장의 주변 외에도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 정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박영준 비서관의 지시로 사찰했으며 정태근 의원, 친박계 이성현 의원 등이 사찰을 당했다고 한다.
- 국정원 직원에 의해 국정원장이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도 있다.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의 사유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청와대로 파견된 이창화 행정관이 국정원장과 국정원 고위간부 부인

등에 대한 사찰⁶⁾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정두언 의원이 2008. 6.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을 권력사유화 장본인으로 지목한 이후 이 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전출되었는데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로 옮긴 이유가 당시 김성호 원장이 자신을 사찰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후 김성호 국정원장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으로 조직의 수장이 바뀌자 그는 2009. 3. 국정원으로 복귀했다.

- 2010. 7. 22. 오마이뉴스 기사⁷⁾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흑금성 간첩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7.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 북경에서 접촉한 북한인사가 흑금성의 북측파트 너인 리호남이었다는 이유로 이강진 전 공보수석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위치 및 착발신 이력 추적, 음성과 문자메시지 확인, 부인 명의의 집전화 감청, 모든 우편물 열람, 이메일 내역 및 내용 전부 열람, IP추적을 통한 로그인 내역 열람, 타인과 나눈 대화 감청 및 녹음 확인 등이 이뤄졌다.
- 한겨레 기사⁸⁾에 따르면,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을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급”라고 작성 배경을 밝힌 뒤, 박 시장 등 야권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련 예산 집행실태 철저 점검”, “여당 소속 시의원(28명)들에 시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독려” 등 헌법기관을 활용한 정치공작 차원의 대응 방안이 제시돼 있다. 또한 학부모 단체, 경총·전경련, 저명 교수·논객, 언론 사설·칼럼,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 등 범보수진영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⁹⁾.

6) 조선일보 2010. 11. 19.자 (與 고위층 “5급이 국정원장 사찰했다고 들어”)

7) 오마이뉴스 2010. 7. 22.자 (국정원, 참여정부 고위직 인사 무차별 도·감청); 오마이뉴스 2010. 7. 23. 자 (간첩수사는 핑계, 실제론 이해찬 표적사찰?)

8) 한겨레 2013. 5. 15.자 (‘박원순 시장 제압’ 국정원 문건 입수)

9) 2013. 5. 28. 서울시는 ‘국정원 추정문건 정부 등 대응지침 진행사항 분석’을 작성, 언론 등에 배포하였다. 이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입수한 서울시가 그 문건 내용과 문건상 대응지침을 분석한 것이다.

이 ‘국정원 추정문건 정부 등 대응지침 진행사항 분석’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우선 ‘박원순 제압’문건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진행사항을 분석하면서 특히 문건의 대응지침에 따른 조치로 추정되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손해배상금 포기관련 항의 및 집회 등 5건, 좌파인물 시정참여 여론 공론화 등 문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4건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3) 법원 검찰에 압력행사

가) BBK 사건 개입

- 한겨레 기사¹⁰⁾에 따르면, 국정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사항을 확인하고, 재판관을 참관하다 판사에게 적발되었다.
- 2008. 7. 3. 서울 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 김 모 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개인 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김 씨는 지난 5. 말 첫 변론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해 진행사항을 물었고 김 판사가 난색을 표하면 전화번호를 문자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7. 3. 재판에서도 재판시작 10여 분 후 법정에서 들어왔다가 “어떻게 오셨냐”고 문자 머뭇거렸고 “기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나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국정원 직원임이 드러났다¹¹⁾.

나) 전직 대통령 수사 개입

-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기사¹²⁾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검찰 고위간부에게 국정원 직원을 보내 원세훈 국정원장의 뜻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신병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 부인했다.

4) 언론사 관여

서울시의 분석자료를 보면, ‘박원순 제압’문건의 대응책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국정원이 조직을 가동하여 동 문건의 내용을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정원 추정문건 정부 등 대응지침 진행사항 분석 자료를 보면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이 실제로 야당 소속 시장의 정책과 동태를 사찰, 감시하면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야당 소속 시장을 정치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긴 정황이 역력한 것이다.

10) 한겨레 2008. 7. 3.자 (국정원 BBK 재판 ‘사찰’ 파문)

11) 2009. 2. 6. 김균태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 조선일보 2009. 5. 7.자 (국정원장, 검찰에 “노(盧) 불구속해 달라”); 오마이뉴스 2009. 5. 7.자 (국정원장이 왜 ‘노무현 불구속’ 중용했나?)

가) 언론 대책회의 참석

-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기사¹³⁾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제2차장인 김희선은 8. 11. 오전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대책논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했다.
- 이에 대해 민주당의원들은 8. 11.이 정연주 KBS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결재한 시점임을 감안,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비판하였으며 10. 28. 민주당 전병헌, 이춘석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김차장을 국정원법 제3, 11, 19조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 이후 김성호 국정원장은 10. 28.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 김 차장의 언론대책회의에 의하여 불거진 ‘정치사찰’ 논란에 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사과했다.

나) 탈북자 출신 기자 사찰

- 신동아와 오마이뉴스 기사¹⁴⁾에 따르면, 김정은 후계논의, 화폐개혁등 다수의 북한 발 특종기사를 써 연례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한 최선영 연합뉴스 기자를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것이다.
- 최 기자는 96. 아프리카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근무하던 남편 현성일씨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으며, 그녀는 망명 뒤 평양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험을 인정받아 연합뉴스에 채용되었다. 남편 현 씨는 국정원 산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일했다. 최 기자는 ‘북한현지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후계논의, 화폐개혁등 다수의 북한 발 특종기사를 써 연례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 5.초 북한관련 데이터베이스 부서로 발령 받는다. 형식은 승진이었지만, 비취재부서였기에 사실상 최 기자는 취재 부서로의 배치를 요구했다. 받아드려지지 않자 결국 2010. 5. 휴직계를 내고 휴직했다.
- 이후 2010. 7. 남편 현 씨가 국정원에 부부동반 여행을 위해 출국보고를 하

13) 조선일보 2008. 10. 24.자 (국정원 2차장 방송정책모임 참석 논란); 오마이뉴스 2008. 10. 28.자 (국정원장, 2차장 ‘언론 대책회의 참석’ 사과); 오마이뉴스 2008. 10. 28.자 (민주당, 국정원 2차장 검찰에 고발)

14) 신동아 2010. 10.호자 ([심층취재]‘새터민은 잠재적 간첩?’... 분노하는 탈북자 사회 : 하나원 근무자 줄줄이 실직, ‘김정은 후계’ 특종기사는 석연찮은 휴직); 오마이뉴스 2010. 10. 20.자 (국정원, ‘김정은 후계’ 특종기자 사찰했다)

자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남성욱씨가 ‘어차피 최 기자가 국정원 내사를 받고 있어서 출국이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으며 비슷한 시기 최 기자가 취재 부서로의 복직을 요구했으나 연합뉴스의 간부가 ‘조만간 국정원 최고위 측의 인사 변동이 있을 듯한데 이것만 마무리 되면 복직이 가능할 것이므로 잠시만 기다리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 정보기관의 보고보다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해 먼저 북한의 주요정보가 보도되자, 청와대와 국회정보위의 질타를 꺼려하는 국정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최 기자는 2011. 1. 31. 북한자료부장으로 복귀했으며, 2011. 2. 14. 한국기자대상 수상 후, 2011. 12. 19. 김정일 사망사건 직후 취재부서로 복귀했다.

5) 노동조합 사찰

가)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외압

- 경향신문 기사¹⁵⁾에 따르면 국정원은 양천구청에 양성운 당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에 대해 징계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 양 후보는 2009. 7. 서울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고, 양천구청은 양성운 위원장 후보에 대해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한바 있다. 양 후보에 따르면 노조차원에서 담당부서에 중징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문자 ‘국정원’ 등 각종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와 버틸 수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나) 기룡전자 노동조합 탄압

- 참세상과 레디앙 기사¹⁶⁾에 따르면, 국정원은 기룡전자와 노조의 갈등이 상급단체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 사측은 결코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주질 말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머니투데이는 기룡전자 협상결렬 관련 기사¹⁷⁾에서 “기룡전자 노사갈등이 상

15) 경향신문 2009. 10. 28.자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조직적 외압’)

16) 참세상 2008. 9. 11.자 (기룡분회, 기룡사태 ‘국정원 개입’ 의혹 제기); 레디앙 2008. 9. 11.자 (‘기룡 죽이기’ 국정원까지 나서나?)

17) 머니투데이 2008. 9. 8.자 ([기룡전자 협상 결렬] <상> 노사갈등, 상급단체 힘겨루기 확산)

급단체 힘겨루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협상 결렬 후 사측은 경영자총연맹과 국정원 등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안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 경북지역 노동조합 사찰

- 참세상 기사¹⁸⁾에 따르면, 금속노조 KEC지회, 경주 발레오만도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2011. 10. 7. 아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세 곳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 동원,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협박, 어용노조 설립 등 철저히 준비된 노조파괴 공작이 똑같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 KEC지회는 지난해 국정원까지 나서 노조를 사찰해 왔음을 드러내는 회사 측 문건을 폭로했다. 문건의 제목은 ‘직장폐쇄후 상황일지’로 지난해 7. 3.부터 12. 13.까지 날짜별로 노조 측 동향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 문건에는 2010. 11. 10.과 11. 일지엔 “관리자 비상대기(4공장 점거 정보-국정원)”이라고 적혀 있다. 즉 사측이 국정원으로부터 노조 측 동향을 파악한 것이다.

6) 시민사회단체 탄압

가) 시민단체 후원 기업 압박

- 오마이뉴스 기사¹⁹⁾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8. 9. A공기업에 최근 3.간 집행된 시민단체 후원 내역 일체를 제출을 요청하여 제공받았다.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등을 묻고 관련 내용을 문의, 부담을 느낀 A공기업의 담당자는 꼭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요구한 곳이 국정원이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심지어 국정원은 B공기업에 대하여도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등을 묻고 관련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8) 참세상 2011. 10. 7.자 (노조파괴 국정원 개입 의혹)

19) 오마이뉴스 2008. 10. 9.자 (“기업의 시민단체 기부내역 제출해 달라” 국정원, 현행법 어기면서 ‘정보수집’ 논란)

나) 시민단체활동가 사찰 및 후원 기업 압박

- 경향신문 기사²⁰⁾와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의 발언을 따르면 희망제작소는 하나은행과의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합의했으나, 2009. 1. 하나은행 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무산되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 이사의 말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하나은행 측에 연락하고 위 사업에 개입함으로써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 박원순 상임이사의 2009. 9. 17. 기자회견문을 보면 친환경-자선단체인 아름다운가게도 ▶2009. 4. 모 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 국정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가 아름다운가게에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 2009. 6.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특정 프로젝트를 몇 . 째 공동 추진하던 모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라고 문의하였으며, ▶ 2009. 5. 경기 지역 모 시 평생학습관 공동행사와 미팅할 때 관련자가 “국정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름다운가게의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는 등 곳곳에서 국정원의 활동개입이 드러났다.
- 국정원은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사실의 일체를 부인하였고 법적검토를 추진, 국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다.
- 조선일보 기사²¹⁾에 따르면 재판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는 2011. 12. 2. “국정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박 시장의 폭로는 의도적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2. 4. 6. 사실상 국정원이 원고로서 제기한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

다) 반값등록금 활동 사찰 및 대응책 수립 주문

- 한겨레 보도²²⁾에 의하면 국정원의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20) 경향신문 2009. 6. 18.자 (박원순 “국정원, 불법 민간사찰”)

21) 조선일보 2011. 12. 3.자 (‘국정원 민간사찰 의혹 제기’ 박원순 시장 2심도 승소)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 자료로도 게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폭넓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던 야권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반대논리와 심리전 공작계획을 국정원이 나서서 세운 것이다.

- 이 문건은 국정원 'B실 사회팀'의 6급 조아무개가 2011. 6. 1. 작성한 것으로 돼있다. B실 외에 작성 부서로 표기된 '2-1'팀은 국정원 2차장 산하의 정보수집·분석 부서로, '박 시장 제압'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익전략실이다. 특히 이 문건에는 작성자인 조아무개씨(6급), 함아무개씨(4급), 추아무개 팀장의 실명이 드러나있다. 한겨레신문의 취재 결과 이들은 모두 당시 해당 팀에 소속된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됐다.
- 이 문건에 자세히 서술된 반값 등록금 반대 논리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 책임론에 대한 반박과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다. 정부 책임론 반박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내로 안정시킨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비싼 등록금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참여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을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정치인으로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자녀를 해외로 유학보낸 것'을 "표리부동 행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라고 주장하고, 이를 홍보하는 공작 방식을 세운 것이다.

7) 문화행사 탄압

가) 불교계 행사 방해

- 한겨레 기사²³⁾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조계사에 '압력'을 행사해 2010. 1. 31.부터 2.7.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를 방해했다. 조계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 권열 씨가 28. 오전 전화를 걸어 '반정부적인 정치집회가 조계사에서 열린다. 총무원장 스님이 방북도 하는

22) 한겨레 2013. 5. 20.자 (국정원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문건 입수)

23) 한겨레 2010. 1. 30.자 (국정원 직원 "경내 집회, 종단에 누 될 것")

데, 이런 정치집회는 종단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 전화가 있는 뒤 결국 주지 스님의 지시로 행사가 불허됐다. 또, 총무과장에 따르면 같은 날 14시경 주지스님이 불러 가보니 권 씨가 함께 있었다.

- 불허된 행사는 누리꾼 그룹 등이 지난 2009. 12. 6. 조계사에서 진행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하기 및 배달행사 '사랑을 담그다'에 이은 행사로 '바보들 사랑을 쌓다'라는 이름으로 1. 31.부터 2. 7.까지 라면상자 1000개 를 이용해 10m 높이의 첨성대 조형물을 쌓고 이 라면을 불우이웃에게 나눠주는 행사였다. 행사 기간에는 '의료 민영화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4대강 사업 추진 중단', '<한국방송>(KBS) 수신료 거부' 등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도 준비돼 있었기에 주최 측은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에 대한 압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 미술작품 전시 방해

- 한겨레 기사²⁴⁾에 따르면 12. 3. 국정원 광주지부 한 직원이 광주시 문화예술부서와 5.18 기념 문화관 대관부서에 전화를 걸어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대통령을 풍자한 '삽질공화국' 작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자, 광주시는 전화통화 후 운영조례를 검토, 작품의 전시가 전시장 설치 목적에 어긋나고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주최 단체에 철거를 요구했다.
- 또한 광주민족미술인협의회도 "전시 개막 직전인 3. 오후 5시께 시의 5.18기념문화관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 '이 대통령을 비판한 작품을 철거하지 않으면 전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주민미협이 작품 철거를 하지 않자 시는 전시장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으나 비판여론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기공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했던 4. 하루만 중단된 뒤 5. 부터 다시 열렸다.

다) 환경영화제 개최 방해

- 한겨레 기사²⁵⁾에 따르면 2004.부터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 환경영화제에 2억여 원씩을 지원해왔는데, 2009.은 뚜렷한 이유 없이 지원금이 갑자기 보류되었다. 환경재단 최열 대표와 이미경 사무총장이 말한 바로는 2009. 5. 19. 국

24) 한겨레 2009. 12. 4.자 (국정원, 대통령 풍자 설치작품 철거 압력)

25) 한겨레 2009. 6. 24.자 (환경영화제 지원 중단 '이상한 이유')

정원 조정관이 서울시의 담당 본부장에게 전화해서 지원금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 이미경 사무총장은 “최 대표가 이만희 환경부 장관에게 전화했더니 ‘쉽게 지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유인촌 장관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했다. 그래서 유 장관을 만났더니 ‘상황이 좋지 않다. 좀 기다려 달라’고만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5. 25.엔 직접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을 만났다.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기후변화리더십과정에 연사로 나온 오세훈 시장을 붙잡고 “환경영화제 지원에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오 시장이 ‘면목 없습니다. 잡아놓은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국정원 압력설을 묻자 오 시장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이 총장은 밝혔다.

8) 기타 민간 개입 및 사찰

가) 4대강 사업 비판 교수모임 사찰

- 오마이뉴스 기사²⁶⁾와 2008. 3. 30. 대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성명서를 보면, 경찰과 국정원이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모임에 대해 모임의 성격이나 정치 성향을 파악했다.
- 서울대, 충남대, 가톨릭대, 한남대, 목원대, 안동대, 한국해양대 등 많은 대학에서 모임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한 경찰과 국정원의 성향조사가 이루어졌고, 목원대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목원대의 B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운하반대모임에 대해 물어보는 등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위반한 성향조사가 이루어졌다.

나) 4대강 지역 주민 대책위 회유

- 위클리경향 보도²⁷⁾에 따르면, 국정원이 4대강 정비 사업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여군 세도면 대책위가 정부

26) 오마이뉴스 2009. 3. 30.자 (국정원·경찰, 전국 ‘운하 반대 교수’ 성향 조사 “정치사찰, 공안정국 악몽”... 총선 정국 강타할 듯)

27) 위클리경향 2009. 5. 21.자 ([포커스] 국정원, 4대강 정비사업 개입했다)

과천청사 항의 방문을 결정한 직후, 국정원 직원이 위 대책위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청와대 비서와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 굳이 경비를 들여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라며 “그렇게 하면 밋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변인실 관계자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통상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서 이러저러한 부탁을 들은 모양”이라고 시인했다.

- 국무총리실 역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4대강 관련 국정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국정원의 4대강 사업 관여는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다) 민간기업 압박

-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를 둘러싸고 포스코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오종택 인선 ENT(주) 회장은 2009. 10. 1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포스코와 싸우느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 또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장관님 보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매일 일일 상황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국정원 광주지부에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기업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라) 세종시 대책위 회유

-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 기사²⁸⁾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임장철 연기군의회를 비롯한 면장, 농협조합장 등을 만나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세종시 원안을 주장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표명했기 때문에 원안이 수정될 것”, “원하는게 뭐냐,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주겠다”면서 원안 수정에 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은 세종시 원안이 수정되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에 ‘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는 발언도 했다.
- 이후 국정원 관계자는 “접촉이 있는 것은 맞으나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다.”며 군의원 등의 지역인사를 세종시 관련하여 접촉한 것을 시인했다.

28) 오마이뉴스 2010. 1.2.자 (국정원 직원, ‘세종시’ 관련해 연기군 주민회유); 경향신문 2010. 1. 3.자 (국정원 직원이 세종시 백지화 회유)

마)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사찰

- 오마이뉴스 기사²⁹⁾에 따르면 5. 4.,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앞에서 프랑크 라 튀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몰래 촬영하던 사람들이 탄 승용차가 목격됐다. 이후 한국일보³⁰⁾에 의해 이 차량이 국정원 소유부지의 공터(서울 서초, 구룡산 정상)에 주소를 둔 유령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정원 사찰의 흑으로 번졌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을 국가기관이 사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 라 튀 보고관은 5. 17.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사찰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며 미행, 사찰 받았음을 폭로했다. 그는 5. 15. 연세대학교 강연에서도 “과테말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조사활동을 위축시킬 수 없었다”며 “이번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 장자연 사건 개입

- 프레시안과 미디어오늘 기사³¹⁾에 따르면 MBC 이상호 기자는 MBC의 모바일 전용TV ‘손바닥TV’에서 장자연 자살 사건을 수사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의 조서를 공개했다. 조서는 국정원 직원이 장자연 사건을 폭로한 장자연 씨의 매니저 유장호 씨와의 연락을 장자연 씨가 자살한 날부터 취했으며, 경찰은 유장호 씨를 수사하며 국정원 직원의 개입의혹을 알았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 이상호 기자의 폭로 다음날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9) 기타 불법행위

가) 국정감사 개입

- 오마이뉴스, 한겨레, 프레시안 기사³²⁾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이 피감기관을

29) 오마이뉴스 2010. 5. 17.자 (유엔특별보고관 “한국정부의 인권의식 실망이다”); 오마이뉴스 2010. 6. 8.자 (프랑크 라 튀 유엔특별보고관 “한국에서 국정원 감시 받았다”)

30) 한국일보 2010. 5. 17.자 (국정원, 유엔보고관 사찰했다 : 미행 차량의 소유주 주소지 국정원 부지로 확인)

31) 프레시안 2012. 1. 5.자 (장자연 매니저, 장자연 자살 당일부터 국정원 직원 만났다); 미디어오늘 2012. 1. 6.자 (국정원, 장자연 사건 개입 의혹에 “사실무근 법적대응”)

사찰해왔다.

- 피감기관 상황팀으로 하여금 수감이 끝난 뒤 2시간 이내에 국정원 조정관과 경찰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수감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서 주요 사안, 특이사항과 질의 답변 내용, 감사장 주변의 집회·시위내용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나) 종교대책회의 개입

-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³³⁾ 당시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2차관이 2008. 8. 26.에 주최한 ‘종교차별 시정대책’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국정원 국장급 관계자가 동석했다.
- 신재민 차관은 국감에서 국정원 참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볼 때 종교차별시정의 관계기관으로 볼 수 없고 직무범위를 위반한 것이다.

다) 인사청문회 정보제공자 색출

- 프레시안, 경향신문 기사³⁴⁾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2009. 7. 20. 출연한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박 의원이 천성관 검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후보자의 부부동반 해외 골프여행 출입국 기록, 후보자 부인의 명품 구매목록 등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국정원이 관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제보자 색출 작업을 벌였다.

라) 불교계 인사 압력

- 조선일보, 오마이뉴스 기사³⁵⁾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은 2011. 3. 6. ‘마지막 법문’에서 자신의 봉은사 퇴출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 명진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원세훈 국정원장이 2.2. 봉은사를 방문해

32) 오마이뉴스 2008. 10. 17.자 (국감 끝나면 국정원·경찰청 정보 보고); 오마이뉴스 2008. 10. 20.자 (부산노동청 국감, 국정원 서울본부 직원에 보고); 한겨레 2008. 10. 20.자 (‘국정원에 국감보고’ 노동부 난타); 프레시안 2008. 10. 20.자 (이영희 노동장관 “국정원 보고’ 통상적...직원 실수”)

33) 오마이뉴스 2008. 10. 24.자 (정세균 “한나라당 피 못 숙여, 관계기관대책회의 부활”)

34) 프레시안 2009. 7. 17.자 (박지원 “국정원과 검찰이 내 주변 조사”); 경향신문 2009. 7. 17.자 (천성관 자료 출처·제보자 검찰·국정원서 조사 착수)

35) 조선일보 2011. 3. 6.자 (명진스님, “봉은사 떠나는데 국정원 개입 있다”); 오마이뉴스 2011. 3. 6.자 (명진스님 ‘봉은사 퇴출’에 국정원장도 개입?)

- 1.22. 리영희 선생님 49재 때 제가 했던 법회 내용에 대해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지인 진화 스님이 압박을 받았겠나, 안 받았겠나”라고 발언했다. 이에 신도들이 “받았어요.”라고 답하자 명진 스님은 “봉은사 문제는 권력과 밀접하게 결합된 문제다. 자승 총무원장, 이명박 장로, 이상득 의원의 총체적인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 2010. 3.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찾은 자리에서 ‘강남에 좌파 스님을 그냥 두면 되겠느냐’고 했다.”며 “봉은사를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봉은사를 정권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여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명진 스님은 주지 임기 만료를 5. 앞둔 2010. 11. 9. 주지직에서 내려와 문경 봉암사로 떠나 수도 중이었으며, 2011. 3. 1. 봉은사 주지인 진화 스님으로부터 “봉은사를 떠나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 국정원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10) 평가 - 이러한 사찰과 정보수집의 원인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정권의 반대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탄압의 성격이 강하다.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직권남용 의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매우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때의 연결고리는 ‘중북프레임’이다.
- 관련하여 2013. 3. 18.자 한겨레 보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날자 한겨레 신문은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³⁶⁾’이라

36) 원 전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은 몇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 첫째,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적 현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왔음을 보여주는 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3. 19.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함. 4월 국회에서는 주요개혁입법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동, 지시 - 2010. 4. 16. “세종시·4대강 등 주요 현안에도 원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대처해주시기 바람”이라고 언동, 지시 - 2011. 1. 21.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책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지역민들에게 최대한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이라고 언동, 지시 - 2011. 1. 21.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진의를 적극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임 - 2011. 5. 20.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되었다”고 언동 - 2011. 12. 16.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관련 좌파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재해복구비용, 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들에게 적극홍보할 것”이라고 언동, 지시 |
|--|

는 제목의 자료를 인용하여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고 보도하였다. 위 신문은 이 자료의 내용으로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국정원 직원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주문한 내용이 다수 발견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을 탄압하기 위해 일선 직원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나서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한 정황도 들어 있다면서, 이 지시 내용은 지난 대선 때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00씨³⁷⁾가 작성한 글과 매우 비

- 둘째,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찬양하는 내용,

- 2010. 1. 22.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고,
- 2011. 11. 18. “한미FTA 처리문제도 정부·여당에 대한 온갖 비난 기사가 실려 여론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므로 치밀한 사전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언동
- 2011. 12. 16.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관련 좌파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재해복구비용, 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들에게 적극홍보할 것”이라고 지시
- 2012. 1. 27. “윈도 혼수두기식 활동을 탈피, 국정성과 홍보확산 실행에 주력”하라거나, “정부가 지난 4. 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추진한 4대강 사업 등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이라고 지시

- 셋째, 소위 ‘종북, 좌파단체’에 대한 대응 및 공작을 지시하고 있는 내용,

- 2009. 6. 19.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
- 2010. 3. 19.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 2010. 7. 19.에는 야당을 무조건적인 반대집단으로 매도
- 2011. 1. 21. “종북좌파 척결문제는 미온적이 아닌 확실대처해야 한다”고 지시
- 2011. 1. 21.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동
- 2011. 2. 18.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 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란다”고 지시

- 넷째,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단이 지난 대선 등에서 불법적으로 댓글을 달고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용 등이다.

- 2010. 7. 19.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는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원이 해야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고 언동, 지시
- 2011. 11. 18.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확실하게 대응 안 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 발생. 악의적인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해야 함”이라고 언동, 지시
- 2012. 5. 18. “종북세력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선동하며 국정운영을 방해, 좌시해서는 안됨”이라고 언동, 지시
- 2012. 11. 23. “종북 세력들은 사이버 상에서 국정 폄훼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이라고 언동, 지시

37) 지난 2012. 12. 19. 치루어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소속 여직원 김00씨가 국정원 직원

슷해, 김씨의 활동이 원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 그와 같은 활동이 가능한데는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빌미로 정치인·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국회, 법원,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에 대한 개입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이는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 부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은 기획조정권한을 핑계로 정부부처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에 출입하고 있다. 또,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고 상급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
- 국정원의 민간사찰과 국가기관의 사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이 현재 허용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수집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기능이 더 엄격하게 행사되거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이점 후술한다).

나. 정보 수집 실패

1) 개요

-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이 주요 정보 수집에 실패하거나 정보 수집 과정에서 물의를 빚는 일이 이어져 왔다. 특히 국정원의 정보 수집 실패 사건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로는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 정보수집이 실패한 사건과, 김정일 사망 시기에 대한 정보획득을 실패한 사건을 들 수 있다.

2)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 정보수집실패

- 국정원 소속 직원이 2011. 3. 16.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해 노트북을 뒤지다 노트북을 뒤지다 발각되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 조선일보 보도³⁸⁾에 따르면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익(國益)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협상 전략 등을 파악하려 했던 것”이라며

들은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8대 대선에서 고발인 정당의 대선후보자인 문재인을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국정원의 시설 및 조직을 이용하여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다량으로 작성, 유포한 행위가 적발된바 있었다. 이 사건이 결국 국정원의 대선개입공작의 실상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 결국 검찰의 수사에 의하여 그 일단이 밝혀진 것이다.

38) 조선일보 2011. 2. 21.자 (인니특사단 숙소 잠입자는 국정원 직원)

“직원들이 발각된 것은 뜻하지 않은 실수”라고 했다. 남자 2명, 여자 1명의 국정원 팀은 16. 오전 9시27분쯤 롯데호텔 19층 인도네시아 특사단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만지다 인도네시아 직원과 맞닥뜨리자 노트북을 돌려주고 자취를 감췄다. 당시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장관(부총리급) 등 장관급 6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50여명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떠난 직후였다.

3) 김정일 사망 시기 정보획득실패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1. 12. 20.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해 “북한의 발표 전에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몰랐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원 원장은 “(김 위원장의 사망을) 북한 내부에서도 몰랐다.”며 “어제(19.) 훈련에 나간 각군 부대가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낮 12시 보도 이후 예정된 미사일 발사를 취소하고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 측근세력만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원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정원은 12. 19. 북한 조선중앙TV의 방송을 통한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후 51시간 가량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³⁹⁾.

4) 평가

- 국정원의 정보 수집 실패의 이유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휴민트를 책임지는 대북파트의 소외로 붕괴했다는 주장이 있다. 현 정부 출범 전후 소위 대북휴민트가 와해되었고 그 이유는 이명박 음해세력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내 정보 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 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⁴⁰⁾.

39) 이에 대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북정보력의 부재를 비판했으며 외통·국방·정보위에서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당시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 당국의 대북 정보 수집력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당장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사태가 마무리되면 정보 당국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정몽준 전 대표는 “우리의 정보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정말 걱정이다. 무력도발이 발생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도 “정보수집 능력이 인터넷 검색수준이다. 삼성은 발표 전날 알았다고 한다.”며 개탄했다.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 능력이 신호정보와 영상정보는 상당수준에 올랐다는 평가지만 인적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수집은 부재하다는 평가다.

40) 한겨레 2011. 12. 21.자 ([사설] 고장난 ‘원세훈 체제’ 언제까지 내버려둘 텐가); 경향신문 2011. 12.

- 어느 쪽이 사실이던 간에 현재 북한을 상대로 한 휴민트 수집체계는 붕괴했고, 그 이유는 인사농단과 국내정치개입의 원래의 국정원의 DNA에 있는 것 같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의 인사가 정보의 전문성이 없는 측근 인사로 점철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⁴¹⁾.

다. 소결론

- 이상 불법사찰과 정보실패 두가지 사례만 보아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제 소임에서는 얼마나 무능하였는지, 그러면서도 민간인 사찰, 국내정치개입 부문에서는 얼마나 전횡을 일삼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과 호텔 객실 입구에서 맞닥뜨릴 때 국정원 요원의 모습과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요원, 장자연 사건의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 요원의 모습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의 모습을 단적으로 대비시킨다.
- 이제 항을 바꾸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이토록 제 소임에는 무능한 반면, 정치개입과 대선개입에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 분석해 본다. 앞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의 전횡과 무능’ 항목이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의 모습을 분석한 것이라면 항을 바꾸어 기술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의 인적 구성의 모습은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의 전횡과 무능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국정원이 그토록 대선에 목을 맨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국정원의 정치 및 대선 개입공작의 구조적 원인 -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

가. 정치 및 대선개입의 실상에 관하여

- 국정원이 정치인을 사찰하는 등의 일상적인 정치개입을 일삼은 점은 앞서 본 바이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한 점은 이번 검찰의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으로 그 일단이 드러나 있다⁴²⁾.

28.자 ([오늘]원세훈과 미스터 빈)

41) 한겨레 2011. 4. 11.자 ([아침 햇발] 프로 국정원?)

42) 이로 인한 국정조사 등 국민적 공분을 돌파하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 6. 24. 전격적으로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공개한바 있다. 이 또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개입의 중대한 사례이다. 여기서는 이명박 정부하의 국정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단 상세한 분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 국정원의 이번 대선에 개입한 진상의 일단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는 점은 이미 앞서 언급한바 있는데, 검찰의 원세훈에 대한 공소장 중 선거개입 부분을 원용하면 다음과 같다.

(2) 선거개입 관련 지시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직 기간 내내 월례 전 부서장 회의 및 일일 모닝브리핑 등에서 차장, 실·국장 등 간부들과 전 직원에게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⁴³⁾와 관련하여 북한이나 종북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들 모두가 반정부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제도권 진입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더욱 시도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 시기에 있어서도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으로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강화함으로써 이들 세력이 선거 공간에 개입하고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여 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결국 피고인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하기에 이름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지시로 귀결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지시하거나 국가정보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으로 게재된 내용 중 아래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다.

- “지방 선거도 이제 있고 좌파들이 여기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북한지령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싸움을 해서...”(2010. 1. 22.)
- “사실상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는게, 요번에 지방선거에서는 2012년도에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다 모아라, 단일화해라 ... 그래 모으라는 거는 희망과 대안 뭐 등 다 만들지만, 어쨌든 선거에는 단일화해라 하는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은 뭐 종북단체 아니야 ... 싸우기는 5개 6개당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이쪽에는 입 하나 밖에 못쓰게 하고, ... 일반 국민이 보면 다수가 반대를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를 다 이용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어쨌든 이게 그런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잡고 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2010. 4. 16.)
- “천안함 발표가 5월 20일이고 5월 24일날 대통령께서 천안함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담화를 하시고 몇일 뒤에 바로 전쟁과 평화 하면서 야당 후보가 뭐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 국정원 직원들은 제대로 거기에 대한 저거 한 번 없이 넘어갔다는 거야”(2010. 6. 25.)
-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

되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하면 전쟁은 하나하나 아니에요. 그런 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2011. 5. 20.)

○ “8.24 주민투표와 관련,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누구나 참여하되, 각자의 의견은 투표로 보여주면 되는데 현재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허용되는 것은 매우 잘못”(2011. 8. 22.)

○ “인터넷 자체가 중복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세우고 있었다 ...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된다”, “10월 26일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런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하고 같은 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나가야 되겠다”(2011. 10. 21.)

○ “재보선에서 서울의 경우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 쪽에서 내놓은게 문제예요. 두 번째 공약이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번째가 국가정보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 트위터라든가 SNS라든가 온라인상에서 별말 다 지어 지고 있어도 ... 그게 올라와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사실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일부러 허위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A, B 후보를 볼 때 A후보가 여성표는 10%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결과는 7%인가 졌더라고. 진짜 1억 피부살이예요. 딱게 아니고 ... 내 이야기는 흑세무민 하려는게 아니고 흑세무민 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가.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상황을 보고를 해요”, “북한은 내년 총선이 강성대국 전에 있으니까 아마 그것까지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얘기도 할거예요 ... 총선이 잘못되면 그런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 작년 선거 때도 보니까 보수세력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결국은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 ...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하고 지난 선거때도 그런 선거였고, 결국은 뭐냐,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협심해 덤벼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2011. 11. 18.)

○ “특히 우리의 경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되어 있어, 적과 중복세력들이 남남 갈등 조장은 물론 주요 국정 성과 폄하를 위해 준동하고 있는 상황임. 이들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관련 현안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2012. 1. 6.)

○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제대로 평가를 못받는 정부가 지금 현재 이 정부 같습니다 ... 우리 정부가 과연 홍보에 제대로 신경을 썼느냐, 정말 제대로 싸워왔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도 해야 된다 ... 그래서 계속 홍보에 대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지시도 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 진짜 금년 한 해가 아주 중요한 한 해 아닙니까.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중복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해든지간에 다시 정권을 잡을라 그러고 여러분

들의 보고서에서도 봤겠지만 지금 북한이 총선에서 야당되면 강성대국은 완성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 야당이 되지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일은 죽도록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 ... 북한이 공갈치니까 달래야지 우리가 또 안 다칠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이 다수가 되고 그게 2010년도 지방선거의 전쟁과 평화에서 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거기서 정신 못차리고 또 아직까지 그러고 있던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되요. 우리 국가정보원은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가정보원이 없어지는거야 여러분들 알잖아”(2012. 2. 17.)

○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13명인가?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중북 좌파들이 한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거고, 우리 원 공격도 여러방법으로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처도 우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준비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2012. 4. 20.)

○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뿐 아니라 국내 중북 좌파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 그 동조 세력들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임. 중북 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제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2012. 6. 15.)

○ “북한이 해외 전산망을 이용하여 사이버 도발을 모색하고 있고 중북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하되, 사소한 일에서 물의 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2012. 11. 23.)

6.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의한 범죄 실행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대응 논지와 함께 하달받은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 팀 70여 명의 직원은 이에 가담한 외부 조력자와 함께, 2012. 8. 29.경 심리전단의 외부 조력자인 이◇◇이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추천○○○’로 접속하여 “MB와 전태일 열사 ... 관계 알고 있냐?”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청계천을 복구하고 전태일 열사 다리와 동상을 건립한 업적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대하여 같은 날 이◎◎ 등 심리전단 사이버 팀 직원 3명이 모두 4개 닉네임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추천’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의견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2010. 4. 3.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모두 1,711회⁴⁴⁾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2012. 9. 17.경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가○○’로 접속하여 “대한민국 민주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게시된 글에 대하여 같은 날 김○○ 등 심리전단 사이버 팀 직원 3명이 모두 4개 닉네임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반대’ 클릭을 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1. 12. 22.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모두 1,281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심리전단 사이버 팀 직원인 김○○이 2012. 11. 6. 17:04경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숲속○○○’로 접속하여 “48번째 해외순방? 진짜 대단한듯”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횟수가 역대 최고로서 외교력이 탁월하다는 취지로 지지·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4.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과 같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 518회, 별지 범죄일람표 (3-2)와 같이 ‘다음 아고라’에서 1,415회, 별지 범죄일람표 (3-3)과 같이 ‘다음 카페 안티MBC’에서 44회 등 합계 1,977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심리전단 사이버 팀 직원인 이◎◎가 2012. 11. 23. 10:41경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가슴○○○’로 접속하여 “연평도 포격 2년 ... 그 날을 잊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 24 대북 제재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보아야 ...”라는 내용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대북 제재 공약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9.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과 같이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73회에 걸쳐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 팀 70여 명의 직원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조직적 활동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가 있는 이슈들에 관하여 게시글 작성과 다른 게시글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표시 등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찬양 내지 반대·비방 의견을 유포함으로써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범죄행위를 실행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이 제도 정치권 진입을 저지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하였다.

43)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주요 선거 일정 및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2009. 4. 8. 경기 교육감 선거(진보 성향 김상곤 후보 당선), ② 2009. 4. 29. 국회의원 5개 지역구등 재·보궐선거(국회의원 한 석도 얻지 못하는 등 여당 참패), ③ 2009. 10. 28. 국회의원 5개 지역구 재·보궐선거(2석에 그쳐 여당 패배), ④ 2010. 6. 2. 제5회 동시지방선거(16개 광역 단체장 중 6곳 당선에 그쳐 여당 패배), ⑤ 2010. 7. 28. 국회의원 8개 지역구 재·보궐선거(5석을 얻어 여당 승리), ⑥ 2011. 4. 27. 국회의원 3개 지역구, 강원도지사 등 재·보궐선거(국회의원 1석에 그치고 강원도지사도 낙선하는 등 여당 패배), ⑦ 2011. 8. 2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투표율 미달로 개표 무산, 오세훈 시장 사퇴), ⑧ 2011. 10. 26. 서울시장 등 단체장 재·보궐선거(야권연대 박원순 무소속 후보 당선), ⑨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과반 의석 확보 등 여당 승리,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 등으로 13석 획득), ⑩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과반 득표 당선으로 여당 승리)

44)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찬반 클릭은 1,281회이고, 범죄일람표 (1)와 같이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정치관여 게시글에 대한 찬반 클릭은 430회로서, 정치관여로 의율되는 찬반 클릭의 합계는 위 둘을 합한 1,711회이다.

나. 국정원의 정치 및 대선 개입공작이 가능한 최적의 인적 구성

1) 원세훈의 국정원장 취임(2012. 2. 12.)

- 원세훈이 국정원의 제30대 원장으로 취임한 것이 2009. 2. 12.이다.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요인에 관하여 2009. 1. 18.자 연합뉴스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이완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느슨해진 국정운영의 고삐를 바짝 죄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요로에 배치해 사정기관부터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⁴⁵⁾.
- 원세훈 전 원장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의 대표적인 참모이자, 이명박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대표적인 MB인사였다는 점에서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국정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정치개입을 일상화할 수 있는 최적의 인적 조건을 구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압’하고자 구체적인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것임은 원세훈의 국정원장 임명으로 넉넉히 예상되어지는 것이다.

2)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을 위한 국정원 내 조직 및 인원의 구축,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의 입안 및 집행

가) 3차장실의 조직의 변모의 추이와 댓글작업의 전개

- 국정원장에 취임한 원세훈은 2009. 9. 경 기존의 대북정보수집과 대북공작을 담당하는 3차장실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즉 3차장실을 인터넷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과학부서, 즉 심리전 전담부서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에 따라 3차장실의 임무는 기존 임무인 대북임무에서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의 ‘국내’정보 수집 및 공작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45) 이러한 원세훈의 국정원장 임명에 관하여 당시 야당은 "이명박 정부는 원세훈 국정원장 체제를 통해 안기부 부활법에 속도전을 내겠다는 것"이라거나, "무늬만 갈아입은 이명박 친정체제 완성"이라며 지역편중인사, 반민주적 인사의 포진을 우려하는 논평을 발표한바 있다.

- 그 후인 2011. 4.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을 역임한 육군소장 출신의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을 국정원 3차장으로 임명한다. 국정원이 아무리 권력기관이라고는 하나, 장관급도 아닌 차관급 처우를 받는 국정원 차장에 육군 소장 출신의 장성급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례적인 일이 가능한 배경은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의 직전 직책이다. 그가 역임했다는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는 대북 심리전을 전담하는 곳이다. 그는 대북심리전 분야에서 같고 닮은 경험을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이라는 사실상의 ‘국내’정보 수집 및 공작분야에서 다시 발휘하고자 국정원 3차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이종명의 인선에 원세훈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도 주요한 관찰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의 3차장 부임 이후 3차장실은 대선 즈음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한겨레신문 2013. 2. 5.자 기사를 보면, 이러한 심리전단이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국으로 개편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국정원은 2012. 11.부터 국정원 3차장인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산하에 심리전 담당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그 안에 안보 1, 2, 3팀으로 명명된 3개 팀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진 것이다. 2013. 5. 7.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지난해 심리정보국에서는 총 76명이 일한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이 이미 원세훈 - 3차장 이종명 - 심리정보국장 민병환으로 이어지는 국정원 수뇌부 3인이 댓글작업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 작년 대선에서 대선개입으로 문제된 국정원 여직원 김00 등의 ‘오늘의 유머’ 등의 사이트에서의 댓글작업은 바로 이러한 계선을 타고 진행된 공작이었다. 즉 김00 등의 대선공간에서의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작업을 통한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타고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속에서 국정원의 심리정보국의 임무와 구체적인 활동상이 무엇을 겨냥했던가는 명확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정원의 심리정보국의 임무와 구체적인 활동상이 누구의 선에서 기획되고 보고되었는지도 상식적인 관점을 보자면 이 또한 명확한 것이다.

나) 국정원 2차장실의 조직 및 역할 -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문건을 통하여

① 한편, 이번에 드러난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반값등록금 문건은 민병환이 차장으로 있었던 국정원 2차장 산하의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익전략실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대공정책실이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명칭과 기능을 바꾸어 국내정치에 불개입하고 동북아허브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바뀌었던 부서인데 원세훈의 국정원장 부임 이후 국익전략실은 다시 종래의 국내정치 개입의 DNA를 회복하여 ‘서울시장의 左편향 市政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과상공세 차단’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이다.

②) 그런데 이 2차장 산하의 국익전략실이 작성한 문건들을 보면 이 문건들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의 점에 관하여 상세하고도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문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0 첫째, 이 문건은 그야말로 국정원이 국내정치정보에 관여하고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제목에 ‘좌파’, ‘좌편향’ 운운하고 있으나, 반값등록금 문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현황은 어떤 점으로 보더라도 국내정치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정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0 둘째, 이 문건들은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문제와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에 있어서 단순한 정보수집에 그치지 않고, 박원순을 “제압”하고 반값등록금 주장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대응을 주문하고 있음이 문건상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 우선 ‘서울시장의 左편향 市政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을 보면 깃발시위 대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관하여 “건전단체들의 항의방문·가두시위 등”을 활용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좌파인물 시정관여에서는 “언론·인터넷을 통해 부당성을 집중 공론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서울광장 조례무효소송, 지역공동체 조성확대 문제에 있어서는 “비난 여론전

조성 및 전개”를 적시하고 있다. 과도한 복지정책 남발의 문제를 보면 “언론·SNS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슈화“하자고 하고 있다.

- 그 외에 박원순 시장의 ”야권 허브 역할 등 정치행태“를 ”범 좌파벨트 구축 등 대결구도를 통한 갈등 조장과 함께 무분별한 포퓰리즘 양산에 따른 정책혼선, 국론분열“로 매도하면서 ”여론전“을 벌여 이슈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 이 문건이 단순한 정보수집에 그치지 않고, 박원순을 “제압”하고 반값등록금 주장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대응을 주문하고 있음은 표지 박스 안 문구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여기서 과연 면밀한 제어 방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음미해볼 대목이다.

박원순 서울市長이 취임 이후 세금 급식 확대 ·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左편향 · 독선적 市政 운영을 통해 民心을 오도, 國政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野勢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
--

- 반값등록금 문건 역시 제목의 ‘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에서 보여지듯 단순한 정보수집에 그치지 않고, 반값등록금 주장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대응을 주문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0 셋째, 국정원 2차장실에서 작성한 이 문건들을 상세히 보면 국정원 2, 3차장실의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공동대응의 면모가 상세히 드러나고 있다.

- 이 문건들을 보면 “건전단체들의 항의방문·가두시위 등”을 활용하여 대응할 것, “언론·인터넷을 통해 부당성을 집중 공론화”할 것, “비난 여론전 조성 및 전개”, “언론 · SNS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슈화“, ”여론전을 벌여 이슈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대응책을 적고 있다.

- 이러한 업무는 3차장실 산하의 심리정보국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다. 또한 반값등록금 문건을 보면 ”심리전에 활용“한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여기의 ”심리전“은 3차장실 산하의 업무이다.

- 이상의 내용에 더하여 앞서 본 ‘전 부서장 회의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증 제3호증의 원세훈의 지시·강조 “말씀”은 원세훈의 단순한 언동이 아니라 국정원 제2, 3차장실의 조직과 인원이 가동되어 관련정보를 수

집하고 공동으로 마련된 대응책을 집행하는 차원에서의 언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세훈은 자타공인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사람이었다. 그런 원세훈이 2009. 2. 국정원장에 임명된다. 국정원을 이명박의 대통령의 친위조직으로 만들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 그리고 2009. 4. 국정원 3차장실을 기존의 대북담당에서 인터넷 및 사이버 공간의 심리전담당으로 조직 및 인적구성을 개편한다. 2011. 4. 군에서 심리전 전문가로 재직하던 이종명을 3차장으로 임명한다.
- 한편 기존 2차장실 산하의 국익전략실은 종래의 국내정치개입의 DNA를 회복하여 3차장실과 공동하여 국내정치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국내의 야권세력 및 시민사회세력을 ‘제압’, ‘차단’할 구체적인 대응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 앞서 본 ‘전 부서장 회의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문건,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문건 등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볼 것이고, 작년 대선의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은 이러한 대응계획안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이다.
-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겨냥한 것이고, 어느 단위까지 개입, 공유된 것으로 볼 것인가?

3)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 개입의 단위

- 가) 이러한 일련의 국정원의 조직 및 인적구성의 함의를 생각하기 위하여는 원세훈 취임 이후 전국단위 대형선거가 3차례(2010년 지방선거,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2012년 대선) 있었다는 점과 결부지어 보아야 한다.
- 결국 국정원의 이러한 조직 및 인적구성의 배치를 통한 정치 개입은 결국 이러한 세차례의 대선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 말고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 또한 ‘박원순 제압’ 문건을 보아도 이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박원순 제압’ 문건의 표지 박스 안 문구를 보면 이 점이 분명하다. 국정원은 박시장이 民心을 오도, 國政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野勢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야세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국정원의 절박감이 강하게 묻어난다. 그 절박감의 실체는 다가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패배이다. 이러한 절박감은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필요로 이어진다.
- 반값등록금 문건의 경우에도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17대 대선후보 시절 공약사항이었다는 점, 2011. 5.경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가 다시 한번 약속한 사항이었다는 점은 속 빼고 있다. 그러면서 야권 인사들의 “비열함”과 “이율배반적인 처신”만을 문제삼고 있다. 다가오는 전국단위 대형 선거에 대한 대비를 빼고는 이 문건들은 아무 것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나)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에 개입한 사람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일단 원세훈 등 원세훈 전 원장들이 입안, 실행한 점은 명확하다. 문제는 행정계선상 국정원장 위의 어디까지 개입하고 관여한 것인지이다.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이명박의 측근이라는 원세훈의 성격이다.
- 둘째, 국정원이 대통령 직할 기구라는 점에서 앞서 본 국정원의 조직 변모 및 인적 구성의 배치가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없이 이루어질리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굳이 정보비전문가라는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 셋째, 조직 구성 및 인적 배치에 있어서 국정원 2, 3차장 인사는 대통령의 재가사항이라는 점이다. 그 연장에서 육군 소장 출신의 인사가 이례적으로 국정원 3차장으로 인선된 점도 단지 원세훈의 역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개입이 있고서야 그 인선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대목인 것이다.

다) 요컨대, 이상에서 본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의 추악한 실상은 위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부터 국정원의 원장, 제2, 3차장이 조직적이고도 사전이 치밀하게 입안하여 실행된 계획의 구체적인 결과인 것이다⁴⁶⁾.

다. 소결론

- 이상에서 본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정원은 본래 제 소임인 국익을 위한 정보수집과 분석에는 철저하게 무능함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제 소임도 아니거니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정보기관의 정치개입금지 의무는 철저하게 배신하여 대선국면에서 유권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형태의 공작마저 시도하였다.
- 이러한 국정원의 행태는 정보기관을 정권의 보위대로 생각하고 악마적 중복프레임을 정치에 활용하고자 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권핵심들의 사고가 국정원법이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국정원의 직무범위로 설정해 둔 법적 근거를 악용한 탓이다. 여기에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중복을 척결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치환한 국정원 간부들의 비뚤어진 사고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 이제 이러한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항을 바꾸어 이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5. 국정원의 미래 - 바람직한 개혁방안⁴⁷⁾

가. 통일해외정보원 전환 - 명칭의 전환⁴⁸⁾과 함께 기능의 재편을 포함하여

1) 개혁과제 1 - 수사권의 분리는 국정원 '탈권력화'의 필수전제이다.

가) 법률적 근거 및 운영실태

-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대공 수사권⁴⁹⁾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다.

46) 이 점에서 이번 국정원의 대선개입공작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법적 책임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47) 이하 글 중 국정원의 바람직한 개혁방향의 글 역시 '공권력감시네트워크' 산하의 '국정원 개혁모임'이 지난 2012. 11. 발간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48) 명칭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명칭만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국가정보원이나, 안전기획부, 심지어 중앙정보부도 의미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본문에서 살펴볼 국가정보원개혁방안과 관련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정보기관이라는 점, 국내정치 관여가 철저히 배제된다는 점, 통일을 준비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49) 형법중 내란, 외환죄 / 군형법중 반란, 암호부정사용죄 / 국가보안법규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 보유, 이와는 별도로 국가정보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 보유

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균형법중 이적의 죄, 군사 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한 7조(찬양, 고무 등), 10조(불고지)를 삭제하였으나, 1996년 다시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된 바 있다.

나)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정보기관은 그 업무의 밀행적(密行的) 속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그 존재 자체를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사생활의 비밀을 비롯한 자유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정보기관이 수사권마저 함께 가질 때 국민이 느끼는 기본권침해에 대한 위구심(危懼心)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일반인의 이러한 위구심이 반드시 기우가 아니었음은 역사상 정보기관에 관한 국내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이기도 하다.” (1994년 조규광 재판관 등 별개의견)

“안전기획부가 정보수집업무뿐만 아니라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및 범죄수사권 등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각부로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둔 것은 국무총리, 국무회의 및 국회의 통제 밖에 두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과 인권옹호보다는 대통령 1인의 개인적인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와 같이 활동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변정수 재판관 소수의견)

-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1993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 준수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
-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던

과거 나치 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 삼아 BND는 수사권은 두지 않고, 필요할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⁵⁰⁾

- 소위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의 공통점은 수사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수사권 분리는 국가정보원의 탈권력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 국정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이 기관에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보안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공유가 책임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 국정원의 입장에 대한 반박

- 국정원은 [국정원 개편요구에 대한 입장]⁵¹⁾이라는 자료를 통해 □ 북한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제3국 우회침투 등 대남공작활동을 유지, □ 북한 및 해외연계 간첩·공작조직 색출을 위해서는 해외 및 대북·국내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안보수사 전담기관이 필요하며, 장기간 간첩 등 안보사범 수사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 및 정예화된 수사인력과 여타 수사기관에 비해 현저한 실적⁵²⁾을 올리고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수사권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위 논거는 여전히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않을 뿐더러, 국정원에 대한 불신의 크기를 감안하지 않은 기득권유지시도에 불과하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

라) 기타

- 수사권이 검찰과 경찰로 이관될 경우 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⁵³⁾, ② 검찰의 공안부 존폐 문제⁵⁴⁾, ③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④ 공판중심주의⁵⁵⁾,

50) 나치의 게슈타포와 옛 동독의 슈타지(공안위원회)처럼 정보기관과 집행기관이 하나의 국가기구에 집중될 경우 국민의 자유권은 늘 위협당해왔다.

51) 2005. 8. 25. 발표한 자료이다. 지금의 이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장일 것이다.

52) 90년 이후 전체간첩 123명중 89%인 109명(경찰 12명, 기무사 2명), 00년 이후 검거간첩 16명중 88%인 14명을 국정원이 검거

53) 최근까지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문제⁵⁶⁾ 등이 관련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개혁과제 2 -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가) 법률적 근거 및 운영실태

-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정원의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 종래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제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에서 수행하였으나 참여정부 들어 대공정책실은 활동을 중지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는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국내정보 수집을 할 수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정부 들어서 자연스럽게 부활되었다.

나)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의 폐지 또는 축소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 참여정부는 국정원장 독대 폐지, 대공정책실 재편 등으로 대응했으나, 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국정원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내보안 정보수집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보안정보와 대북, 국외정보가 명백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 해외, 대북 정보부문과 국내 정보부문의 분리문제

54) 검찰의 공안부를 폐지하고 대공수사를 일반 형사부에서 맡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공안부를 노동부로 개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관련기사는 각 일간지 2003년 3월 14일자

55) 사법개혁추진위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이 이루어지면, 국정원 수사관이 직접 법정에서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정보기관의 속성인 ‘밀행성’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56) 국정원의 수사권이 분리되면 그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권한(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동법 제7조) 역시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①문제의 소재

- 대다수의 외국 정보기관이 해외부문과 국내부문에 별도의 정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형과 분리형을 비교해볼 수 있겠다.

②외국 사례

-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정보업무는 CIA, 국내 보안과 방첩은 FBI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 영국도 해외 정보는 MI6라고도 불리우는 SIS, 국내 방첩은 MI5로도 불리우는 SS로 양분되어 있고,
- 프랑스는 대외보안총국(DGSE)와 국토감찰국(DST),
- 독일은 연방정보국(BND)와 헌법수호청(BfV),
- 이스라엘은 모사드(Mossad)와 신베티(Shin Beth), 일본은 내각조사실과公安 조사청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⁵⁷⁾.

③ 통합 찬성론의 논거

- 통합을 주장하는 측은 첫째, 안보의 개념이 단순한 군사적 안보에서 경제안보, 생태안보, 사회안보적 개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힘들다.
- 둘째, 다수의 정보기관으로 인해 이중의 조직과 예산을 투자해야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 셋째, 분리된 조직들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문제가 단점으로 존재하며, 넷째, 다수의 정보기관들간에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다섯째, 한국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북한이라는 존재가 상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외로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에서 분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57) 해외정보업무와 국내 보안 및 방첩의 업무가 통합된 경우는 소련의 KGB, 이란의 SAVAK의 경우들이 있는데, 소련도 해체된 뒤 러시아의 경우에는 해외정보부(SVR)과 연방보안부(FSB)로 업무를 나누고 있는 양상이다.

④ 통합반대론의 논거

- 분리형이 세계적인 일반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첫째, 조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며, 둘째, 조직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보다 양질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셋째, 견제와 균형의 장점 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교차적인 중복 점검을 가능케 하며, 넷째, 하나의 정보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 독점과 오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정치사찰과 공작 정치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이 이러한 업무 영역의 분리 및 국내 보안 업무의 축소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게 하고 있다.

라) 검토

- 원칙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국내정보수집기능을 분리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정원은 해외, 대북정보와 관련성 있는 국내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이 경우 국정원의 국내정보기능을 분리하여 기존의 정보수집활동을 해왔던 경찰에 넘기는 방안과 별도의 국내정보부문 정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방안은 새로운 정보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이 정보업무를 독점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수사권 문제 등과 연계하여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방안을 고려할 경우 국정원은 그대로 대통령 산하에 두되, 새로 설치되는 국내정보기관은 국무총리산하에 두는 식으로 하여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편, 앞서 지적한대로, ① 국내보안정보와 대북, 국외정보가 명백히 구별되는 않는다는 점, ② 현행법도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이라고 한정열거하고 있어, 형식상 정보수집대상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⁵⁸⁾, ③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기능은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의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보를 '분석'할 권한은 없으므로(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3.다.항 '기획조정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서 다

58) 물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당시에는 그러한 제한 자체가 의미가 없었겠지만, 이를 열거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는지 최근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국정원의 정보수집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

시 언급)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 ④ 수사권 분리가 전제된다면, ⑤ 정보수집범위의 애매모호함은 국회 또는 민간통제로 규율하거나, ⑥ 국내정치관여를 철저히 제한하고 엄벌에 처하는 입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보안정보의 분리문제는 어느정도 기술적이거나 부차적이라는 생각이다.

- 참고로, 현행법과 해외정보처법(노회찬, 2006년 발의), 국정원 강화법(이철우, 2008년 발의)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정보수집범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p>현행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p> <p>노회찬 해외정보처 신설방안(2006. 4.) => 해외정보처는 국외정보수집·작성 및 배포의 직무를 수행한다.</p> <p>이철우 국정원 강화법(2008. 11.) =>1.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가.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나.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 다.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정보</p>

3) 개혁과제 3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가) 현황

- 국정원법과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 국정원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정원은 ① 국가 기본 정보정책의 수립, ② 국가 정보의 중·장기 판단, ③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의 작성, ④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⑤ 정보예산의 편성, ⑥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립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규정 제4조) 등의 기획권한을 가지고 있다.
- 이에 따라 국정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

독기관처럼 군림해 왔다.

나) 기획·조정권한의 폐지

- 국정원은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왜곡과 정책혼선의 방지, 국론분열 방지 등을 들고 있으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해야 할 아무런 논리·필연적 기능은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활동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뿐더러 정보독점의 폐해도 우려된다.
- 따라서 국정원법 등을 개정하여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기획·조정권한을 어느 기관이 가질 것인가?

① 문제의 소재

-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기획·조정업무의 이양과 관련하여 과연 어느 국가기관으로 이양할 것인가 문제된다.
- 일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고려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헌법기관인 국가안정보장회의가 정보의 조정을 담당하고 정보기관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배포라는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NSC의 기능과 역할 등과 관련하여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② NSC의 기능과 역할

- 참여정부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NSC를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의 대북, 해외 정보도 일단 NSC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NSC에 정보관리실을 신설하여 각 부처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종합판단까지 내린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NSC의 주도적 역할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고, NSC에 강력한 중앙통제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결국 국정원의 정보에 의해 휘둘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③ 외국의 사례

- 일본의 경우 총리대신을 지원하는 내각관방(비서실)에는 내각정보관이 지휘하는 내각정보조사실이 있는데, 이 일명 내조실에는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정보집약센터와 내각위성정보센터가 총리를 즉응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또한 경찰청을 지휘하는 국가공안위원회와 방위청을 내각부로 통합 배치하여 종합적인 긴급사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④ 검토

- 위기관리 기획 및 정보의 집약, 조정 기능은 국정원보다는 최고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청와대로 집중되어야 한다. 기존의 국정원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인력군을 이전시켜 NSC의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과 위기관리센터를 집중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정보의 기획조정업무는 정보관리실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NSC가 조정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정보수집업무'와 '정보분석업무'의 분리문제가 제기된다.
- 미국의 경우 다양한 정보기관에서 진행되는 분석업무를 '정보기관이 아닌' 별도의 조직인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에 수렴, 집중시키고 있다. 정보수집업무와 정보분석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CIA, FBI 등 주요 정보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권한을 제한하고, 관세청, 금감원,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다양한 정보수집기관을 NSC가 종합적으로 통제 가능해야 한다. 결국 국정원 개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NSC는 각 정보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NSC의 정보분석능력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NSC가 대북정책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분석을 주도하고, 정책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 다만, 위와 같은 기능과 역할이 NSC에 담보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제91조)상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해 헌법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정원개혁의 큰 흐름속에 NSC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개혁과제 4 -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가)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에는 이란 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며 의회와 정보기관간의 상호 신뢰에 근거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의회가 ‘Need to know’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며, 대신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⁵⁹⁾
- 정보공유를 책임공유로 인식함으로써 보고된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공작사항이나 출처보호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정보위원회(PKK) 소속 의원들은 의회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정당을 대표한다기보다 의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국정원 예산의 현황

-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고 이로 인해 국가 회계 중 가장 투명성이 떨어지는 영역이다. 국정원의 예산 구조는 다른 부처에 비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① 공식적인 본예산(주로 경상비) 외에도 ②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부분, ③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으로 나뉘어져 있다.
- 국정원 본예산의 경우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관·항을 국정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예산안과 관련된 첨부서류

59) 우리의 경우도 국회법 54조 2에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와 위원 및 소속직원의 비밀누설을 금하고 있다.

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위에는 실질 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시 예외 조항을 두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산에 있어 정보위 통제가 무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 또한 국회법은 정보위의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결위 통제를 배제하고 있는데, 결산의 경우는 통제가 더욱 허술해서 원장의 책임하에 소관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만을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완전히 외부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⁶⁰⁾
-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국정원 예산, 이른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경비도 문제이다. 국정원 예산을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길 수 있는 근거는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존재하는데, 1963. 5. 31. 제정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법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제4조에서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국정원이 거의 반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지만, 타 부처를 통한 우회적 지출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사용하는 전체 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단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생략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가 유일한 검증장치인데,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우에도

60)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은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단계, 국회 상임위의 예비심사 단계, 국회 예결특위의 심사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음. 그리고 결산검사는 감사원이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부실한 자료제출과 촉박한 시한으로 인해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정원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다) 개선방안

①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

- 국정원 예산을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기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투명성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고, 예비비속에 포함된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에서도 사실상 항목별 세부심사가 불가능하며 결산시에도 총액으로만 결산이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예산을 예비비에 은닉하는 것은 예비비의 본래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 국정원은 부서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회전체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정치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과거 권력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인 국정원이 우선적으로 예산구조의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국정원의 특수한 지출구조를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사회적인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②예산심사 및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

- 1안 : 현재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예산편성단계)나 감사원(회계검사단계)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사실상 유일한 통제장치이므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 및 결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보좌기구를 신설한다. 보좌기구는 회계전문가로 구성하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 구성함. 보좌기구는 연간 상시적으로 국정원의 예산집행을 검사하고 문제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보좌기구를 신설하는 근거를 두고,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회계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 2안 : 감사원이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도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시행하게 하되, 감사원 내에서도 정보접근범위를 제한하고, 그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만 국정원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시행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의 내부직제를 정비하고,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만 보고하게 하면 될 것이다.

③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권 삭제

-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권을 삭제하여 정보위가 국정원의 예결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국정원법 제12조 제4항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④민간참여에 의한 국정원 통제

- 필요성 :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써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현행 의회에 의한 통제방법이 한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전문성 부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민간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 방안 :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된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과 현재의 국회 정보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민간참여를 가능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활동의 합법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실정법이나 행정명령 혹은 대통령 지시 사항을 위반해 벌이는 정보활동 등을 발견,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 외국의 사례(정보감독위원회) : 대통령 직속,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대외정보자문위원회 (President's Foreign Intelligence advisory Board) 위원 중 1인을 대통령 임명(이 사람이 위원장)하고, 나머지 2인은 민간인 (citizen outside The government)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Exec Crder 12334). 권한으로는 ① 각종 실정법이나 대통령 지시사항을 위반한다고 믿는 정보활동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Inform)하는 권한 ② 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정보활동에 관한 보고를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에게 이첩(forward)하는 권한 ③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의 합법성에 관한 기준에 대한 검토 (review) ④ 위법(unlawful)적이거나 행정명령 혹은 대통령 지시(directive)에 반하는 (contrary)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보고하거나 발견하는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의 General Counsel와 내부 감찰(inspectors General) 현황 (practices)과 그 절차에 대한 검토 ⑤ 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활동(investigation)의 수행 등이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직보(report directly)할 수 있으며, DCI(중앙정보장)이나 CIA 혹은 다른 정보공동체의 기관(agency)에 의해 확인해준 (identified) 문제에 관련한 적절한 조치들을 고려하고 취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정보기관에게 적절한 권고사항을 조언하고 제안할 수 있다.

정보공동체의 부서의 장들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공동체의 수장과 내부감찰의 장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 그들이 위법하거나 대통령명령 혹은 지시사항에 반하는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일하는 멤버들은 비밀준수의무가 있으며 산하에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5) 소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국정원개혁과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 우선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 첫째,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하여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만족하고 탈권력화를 이루어야 하고,
- 둘째,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

- 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며,
- 셋째,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며,
 - 넷째,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가능하도록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국정원법 개정 등의 입법조치를 행하고, 아울러 민간참여를 통한 통제를 위해 가칭 '정보감독위원회'의 신설을 고려한다.

나. 권한 확대 반대

1) 개요

-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테러방지법 제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온 데 이어, 18대 국회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안」,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그 발의에 깊이 개입하고 해당 법안들의 입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 테러 방지, 사이버 안전 등의 새로운 영역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영역에서 기존의 국가기구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응기구와 관련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 그 중심적인 대응기구로 국정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도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비하여 그 직무가 매우 통합적이고 권한집중적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받아 온 국정원의 권한을 크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현황

가) 테러방지법

- 테러방지법은 지난 제16·17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된 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개정으로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훈령에 따라 국정원은 이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경찰·군·법무부·행정안전부·외교통상부 등 국가조직 업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그럼에도 18대 국회에 들어선 2008년 10월 28일, 공성진 의원 등 23인은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의안번호: 1801620)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테러 방지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테러 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의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이 법안의 우선적인 문제는 이 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러’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테러의 개념이 불명확함에 따라 그에 따른 ‘테러단체’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음에도, 소위 ‘테러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과 테러 단체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안이 정치인 사찰은 물론 정부에 반하는 단체와 조직을 탄압하는 흥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정보와 권력의 집중이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안 제8조 제2항)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의장은 국정원장이 되며, 위원은 각부 장관들과 함께 “3.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4. 그 밖에 대통령이 지명하는자”가 된다. 이 법안이 종래의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상의 테러대책회의를 법률로 반영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에 불과하였던 국정원장을 부의장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법안에서 국정원장의 역할이 이전보다 커지는 것은 그 뿐이 아니다.
- 또한 현재 국정원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대테러센터”에 대해 이 법안은 대테러활동의 기획 및 조정(안 제10조 제1항 제3호) 업무를 부과하여 이미 만들어진 군, 경찰 등의 대테러조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안 제15조 제1항)”고 규정하여 각종 국가정보의 과잉생산과 개인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을 허용하였으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요건 또한 그 범위가 불분명한 ‘대테러활동’과 그에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을 도입함으로써 확장하였다(안 부칙 제2조 제3항). 때문에 국정원의 직무라는 이유로 불명확한 기준 하에 국민의 정보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임이 자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특히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출동시킨 경우 대책회의 의장과 대테러센터의 장에게 사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안 제21조), 전시가 아님에도 군대가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은(안 제22조), ‘계엄절차에 의하지 않은 사실상의 계엄상태’를 만들어 낼수 있다. 계엄보다 낮은 통제요건(계엄: 사전통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요구, 헌법 제77조 제5항)이기는 하지만, 국회의 철수요구(테러방지법: 사전통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철수요구, 제22조 제2항)가 없이 군출동이 당연히 정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사이버 안전

- 18대 국회 공성진 의원 등 17인은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것과 같은 날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의안번호: 1801619)을 발의하였다.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자,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인 4. 9. 집권 새누리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자,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공성진 전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즉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사이버위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나아가 국정원장은 사이버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공격 관련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했다. 요컨대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 실무를 총괄하게 되는 것이다.
- 그러나 이 법안은 사이버 안전 대응 체계를 국정원에 집중시킴으로써 사이버공간 통제를 위한 권한을 국정원에 과도하게 부여하였다. 특히, 이 법안은 ISP, IDC 및 포털 등 민간영역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구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았다.

- 현재 사이버 안전을 위한 대응 체계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차원에서 이미 마련되어 있고, 이는 다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제222호 2005. 1. 31. 제정)”과 이를 보다 구체화 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매뉴얼”에 의해 매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까지 마련되어 있다. 다만 위 규정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동 규정 제3조)으로 공공영역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에 의한 국정원 소속의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동 규정 제6조)’를 통하면 간접적으로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국정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과 매우 유사하나, 결정적으로 이 법안은 기존의 체계에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포함하여 현재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넘어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바야흐로 국정원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이버 공간을 국가망처럼 통제, 관리감독 하겠다는 것이다.
- 특히 이 법안은 국정원이 정보를 제공받거나(안 제8조 제2항) 조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안 제10조 제1항) 경우는 ‘사이버테러’보다 범위가 더 광범위한 ‘사이버공격’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시설을 침입·교란·마비·과괴하거나 정보를 누출·훼손·왜곡전파 하는 모든 공격행위’라고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 바, 해킹 사건 하나가 일어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당장 그에 대한 정보를 방송통신위원장과 국정원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것이다. 이는 사이버공격에의 대비로서 필요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국정원이 사실상 인터넷을 국가망처럼 통제, 간섭할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비밀관리

- 정부는 2007. 4. 3.과 2008. 9. 2. 17, 18대 국회에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비밀보호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비밀보호법

은 비밀의 범주와 개념이 포괄적이며,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돼 있던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비밀의 수집분야에는 처벌 조항이 과다하고 자의적 지정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지 않는 등 비밀의 보호에 치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국정원을 비밀보호 기관으로 명시하여 사실상의 보안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어 권력남용이 우려된다. 국정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그러함에도 국정원 권한강화에 따른 감시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 물론 비밀관리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현재 국가기밀은 보안업무규정으로 관리되고 있다.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보안업무규정으로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고 또, 국가기밀이 대통령령으로 관리되어 국회와 사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 시민사회에서도 비밀관리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계속해온바 있다. 그러나 17대와 18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대통령령이 법률로 바뀌는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비밀의 범위를 지나치게 늘려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또,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장치는 너무나 부족하다. 국가기밀에 대한 국정원의 기득권을 유지·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정부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안에서 국정원에게 비밀분실·누설의 조사권이나 신원조사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 둘째, 정부안은 비밀의 탐지·수집·누설을 과도하게 처벌하고 있다. 수집·누설에 대한 처벌조항을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개념이 모호하고 자의적 적용이 가능한 ‘비밀의 탐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셋째, 비밀의 불법지정에 대한 처벌조항은 만들어야 한다. 넷째, 정부안에서 비밀의 범주에서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무제한 적으로 비밀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비밀등급의 유지·변경 또는 비밀의 해제 등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국회정보위원회에 비밀의 관리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하고 비밀을 재지정 하거나 파기한때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보고하게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공공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실·누설시에 국정원장에게 통보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

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여 비밀에 대한 범죄도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법률이 시행되면 종전비밀을 재지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종전 비밀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결론

- 테러방지법안은 테러의 예방과 진압개념이 통합되어 있다. 이는 정보기능과 집행기능을 한 기구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과거 국정원이 보안 수사권의 행사에서 그러했듯이 정보기관의 권한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 정보 기구의 과도한 권력집중과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국정원에 ‘테러’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전 대응과 예방적 정보수집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집행의 영역은 통상적인 국가기구들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기관간의 협조망을 견고하게 갖추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 또한,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테러의 사후진압)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과 기구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및 행정기구들로도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 또한 애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1.25 사이버대란’ 이후 이와 같은 대규모의 사이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대응책으로서 제정한 것이다. 이를 제정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할 때, 사이버 위기의 심각성이 보다 증가되었다거나, 현재의 대응체계를 재검토하고 이를 강화해야할 사이버 위기가 발생했다거나 하는 근본적인 현실 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동 법안이 국정원의 권력 확대를 꾀하는 여타의 법안들과 비슷한 시기에 함께 상정되었다는 사실은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자체의 제정에 숨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국가가 민간부문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시스템은 과도한 권력의 통제이며 공권력의 낭비이다.
- 결론적으로, 국정원의 직무를 테러 방지 및 사이버 안전에까지 확대하는 법안의 입법은 불필요할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 한편,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비밀을 관리하는 현재의 비밀관리체계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되며,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여 비밀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하여 비밀을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관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보안업무규정이 가진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면서 비밀의 범주와 국정원의 권한만을 확대해서는 안된다.

6. 결론

- 앞서 본 국정원의 개혁안- 즉, 국정원의 개혁과제 4가지와 권한확대 불가영역-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이 명언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으로서 최소한도로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이다. 이러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자면 개혁의 동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 그러나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 사태에서 보듯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여 대선 결과를 조작,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은 미동도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러한 쿠데타적 헌정문란의 사태를 호도하기 위하여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 공개하는 등의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래가지고서야 국정원 개혁의 동력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사이버 영역 등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되는 것으로 자칫 귀결될까 우려스럽다.
- 이번 국정원 국면에서 사태의 귀결이 흐지부지되는 경우 앞으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듣는 우리 정치이념지형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단죄하지 못하고 나아가 국정원의 제도적 개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더더욱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되어 앞으로 새누리당 일당의 영구집권 체제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 정권과 조중동, 그리고 공중파마저 외면하는 국정원 개혁을 그러면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결국은 국민의 힘이다. 촛불이 아름답고 소중한 이유가 딱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촛불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끝.